# 예 산 총 칙

2014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|---|---|
| 합 계 | 319,575,426 | 9,587,263 |
| 일반회계 | 234,988,778 | 7,049,663 |
| 특별회계 | 84,586,648 | 2,537,599 |
| 공기업특별회계 | 35,633,786 | 1,069,014 |
|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| 35,633,786 | 1,069,014 |
| 기타특별회계 | 48,952,862 | 1,468,586 |
| 수질개선 특별회계 | 15,999,838 | 479,995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| 48,140 | 1,444 |
| 주택사업 특별회계 | 26,301,863 | 789,056 |
|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| 801,884 | 24,057 |
| 자활기금 특별회계 | 1,584,182 | 47,525 |
|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| 2,303,735 | 69,112 |
|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| 1,372,167 | 41,165 |
|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| 510,833 | 15,325 |
| 기반시설 특별회계 | 30,220 | 907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834,856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채무상환원리금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